

202.64호

행정명령

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 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

2020년 3월 7일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주 재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 202호를 발령함에 따라,

뉴욕주에서 코로나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따라서 오늘 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주 비상시 법률, 조례의 특정 조항, 명령,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조항을 일시 정지 또는 수정시키기 위해 행정부법(Executive Law) 제2-B조 제29-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법률의 일시 중지 및 수정 조치와, 행정명령 202.22호부터 202.26호 202.32호, 202.33호, 202.34호, 202.35호, 202.44호, 202.45호 및 202.53호에 포함된 후속 지침으로 대체되지 않은 모든 지침을 행정명령 202.57호에서 지속되고 포함된 바와 같이 2020년 10월 18일 일요일까지 30일간 더 지속하며, 다음을 본 행정명령 일자부터 2020년 10월 18일 일요일까지 일시 중지 또는 수정합니다.

- 노동법(Labor Law) 제522항은 일일 "총 실업"의 정의에서 2020년 9월 18일 금요일과 2020년 11월 3일 화요일 사이에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Board of Elections) 또는 지방 선거관리위원회를 위해 수행한 파트타임 업무를 제외하도록 수정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고용주를 위해 수행된 모든 업무에 대한 총 주 수입이 504.00달러를 초과하지 않고 고용주가 원 청구 시 확인된 별개의 고용주가 아닌 경우를 말하며, 청구인이 주 급여를 증명할 때 해당 파트타임 업무를 신고하도록 요구하지 않도록 수정됩니다.

또한, 행정부법 2-B조의 제29-a항에 의해 비상사태 기간 동안 재난을 다루는 데 필요한 명령을 발행할 수 있는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2020년 10월 18일 일요일까지 발행합니다.

- 202.28호에 포함된 지침을 수정한 행정명령 202.48호에 포함된 지침, 모든 상업적인 세입자의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퇴거 또는 모든 상업적 모기지의 해당 모기지 미납으로 담보권 행사를 진행 또는 집행 시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까지 지속합니다.

2020년 9월 18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